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3일

발 의 자 :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제리,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유 용, 이상훈, 임종국,  
최웅식, 황규복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의 경우 그 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 오고 있어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축조 신고대상의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항, 안 별표2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li>·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li> <li>·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li> </ul>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li> <li>·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li> </ul>

## II.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가설건축물) ①·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조</th> <th style="text-align: center;">면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새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rowspan="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li>·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li> <li>·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li> </ul> </td> </tr> <tr> <td>제품아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철골조립조</td> <td>3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공연장 매표소</td> <td>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td> <td>5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생활폐기물 보관함</td> <td>경량철골조</td> <td>1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차양시설·비거리개시설</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li>·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li> <li>·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li> </ul>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거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p>제17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p> <p>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의2]</p> <p style="text-align: center;"><u>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조</th> <th style="text-align: center;">면적</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새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row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ul> </td> </tr> <tr> <td>제품아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ul>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li>·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li> <li>·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li> </ul>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거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으로 한정</li> <li>· 옥상설치 불가</li> <li>·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li> </ul>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 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 는 것</li> <li>·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 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 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 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li> </ul>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 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 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 는 것</li> <li>·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 치하는 것</li> </ul>